

■ 主題發表

平生교육과 大學圖書館

申 鉉 德
(慶熙大 수원캠퍼스 圖書館長)

1. 平生교육과 開放大學

Lifelong education, further education, adult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또는 social education 등의 用語가 平生교육을 指稱하는 것으로 빈번히 引用되고 있는데, 이러한 用語들이 意味하는 바는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살리기 위한 購習이나 購演會는 물론 專門人으로서 필요한 高次元의인 新 知識이나 技術의 習得을 위한 研修, 세미나 또는 正規교육을 통한 學士學位 이상의 上位의 學位取得까지 意味하는 것으로 理解해야 할 것이다. 平生교육의 意義와 方法 등에 대해서는 學者들간에 論議의 餘地가 있지만, 미국의 유명한 哲學者인 John Dewey教授가 「教育은 곧 生活이요 또 全生涯의인 成長過程」이라고 말했듯이, 現代社會에서의 教育은 일정한 年齡의 制限을 받는 正規의인 教育過程만 밟으면 끝나는 것으로 보는 從前과 같은 制限된 概念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간적으로는 학교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마을, 직장, 가정 등 모든 곳에서 文字 그대로 平生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80年 10月 27日字로 公布 施行된 우리나라의 第5共和國憲法 第29條는 ⑤항에서 「國家는 平生교육을 振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⑥항에서 「學校教育 및 平生교육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運營教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고 規定함으로써, 平生教育制度의 振興을 國家의 義務로 한다는 소위 平生教育條項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平生教育振興의 國家的 義務를 明文化한 憲法條項을 둔 것은 세계에서 最初인 劃期的措處로서 장차 이 憲法條項과 그속에 담겨진 基本精神에 의거 施行法規를 制定함에 있어서도 示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平生교육과 關聯하여 최근에 大學의 正規教育課程과 並行하여 소위 「開放大學」制度를 大學教育에 導入하려는 움직임이 試圖되고 있는데, 이 制度에 의하면 (1)高等學校卒業者 이상이면 學歷考査와 年齡에 관계없이 원하는대로 누구든지 入學할 수

있고, (2)授業年限에 制限이 없으며, (3)필요에 따라 所定의 課目을 履修, 現行大學에서 實施하는 있는 정도의 學점을 取得하면 4年制 一般大學의 卒業者와 똑같은 學士資格證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大學(college) 또는 綜合大學(University)이라 함은 最高의 教育 또는 研究機關으로서, 유럽에서는 中世紀의 이탈리아의 살레르노(醫學), 볼로냐(法學), 프랑스의 파리(神學, 大學)등 3個大學에서 그 起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中世大學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敎 文化와 信仰의 表現을 學問의 內容으로 한 傳統의 諸條件은 近代에 이르러 각 時期의 一般情勢나 각국의 特殊事情등에 의하여 또는 現實의 社會的, 文化的인 狀況이나 사람들의 生活觀 또는 世界觀의 特質등에 의하여 歷史적으로 發展되어 왔다.

大學은 여러가지 觀點에서 몇개의 類型으로 區分할 수 있다.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를 典型으로 하는 英國型은 中世의 原型을 가장 잘 保存하고, 반대로 파리大學을 典型으로 하는 프랑스型은 프랑스革命후에 人間中心의 方向으로 그 原型을 變革했다. 독일型은 兩者의 中間型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 英國型에서는 학생의 共同生活을 위하여 생긴 Hall Collegium에 그 기원을 가진 大學制度(College-system)가 기본이 되어 있으며, 美國型의 大學에서도 처음에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 19세기에 이르러 顯저하게된 學問의 專門의 分化發展에 따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에서 각종의 專門의인 單科大學들이 創立되어, 오늘날에 있어서는 綜合大學과 併立해서 獨自의 地位를 確立하게 되었다.

그런데 1809년의 베를린大學의 創立은 中世 이래의 大學理念에 대한 새로운 大學理念의 탄생으로써, 大學의 使命이 「眞理의 探求와 學問의 創造의 研究」에 있음을 再確認하고 哲學을 중심으로 하여 專門의인 學問의 有機的統一을 기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綜合大學이 처음으로 具現되었으며, 이러한 대학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前提條件으로서의 「學問研究의 自由」 나아가서 「大學의 自由」를 내세워 전문적인 職業教育보다는 普遍的인 學問의 研究와 教育을 重要視하게 되었다. 이러한 研究의 自由를 中樞로 하는 學問의 全體的 綜合性의 理念은 英國型, 프랑스型 大學의 近代의 發展에도 자극을 주었으며, 특히 美國의 諸大學에 있어서의 大學院課程의 發展에도 큰 影響을 주었다.

우리나라 大學의 原型이 되고 있는 美國型의 大學은 英國型의 기반위에 獨逸型을 발전시켰으며, 20세기에는 美國獨自의 社會現實에서 西歐의인 性格을 벗어나게 되었으며 제 1 차대전 후에는 오히려 독일의 大學이나 영국의 地方大學의 美國化의 影

響을 주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西歐의인 傳統에 復歸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세기에 창조된 소련型的 大學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階級的인 世界觀에 의거한 普遍性을 主張하면서 美國型和 並立하여 서로 다른 制度, 課程 및 目標을 達成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大學은 美國型만을 본따 4年制를 主軸으로 하고있으나 2年制의 專門 大學도 並置하고 있는데 그 特色이 있다. 敎育法 제108조에는 大學敎育의 目的을 「국가와 人類社會發展에 필요한 學術의 심오한 理論과 광범하고 정밀한 應用方法을 敎授·研究하며, 指導的人格을 陶冶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大學도 現代大學의 問題點인 ①大學의 自由 ②職業敎育의 問題 ③世界觀의 確立 및 ④ 大學敎育의 量的擴大와 質的低下라는 矛盾의 問題들을 解決할 수 있는 敎育方法上的 改善을 要求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大學들도 特히 ④에서 指摘한 문제와 관련하여, 大學敎育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숫적인 急激한 增加가 最近에 와서 累績된 再修生들의 문제를 解決하려는 한 方案으로서 大學의 實際的인 受容能力 이상으로 大學人口를 短時日內에 擴張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敎授不足 또는 諸般施設의 不充分 등으로 因하여 大學의 質的低下를 惹起시키고 있는 原因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前記한 「開放大學」制度가 導入되는 경우 누구에게나 大學敎育을 받게 하려는 意圖는 관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制度의 運營面에 있어서 試行錯誤의 可能性을 전적으로 排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하나의 質的으로 低下된 4生制 大學들이 생기게 될 確率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特히 留意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大學圖書館의 役割

1981년도 圖書館法 改正案 제 3 조④항은 大學圖書館을 「大學의 目的인 學生 및 敎授의 敎育 및 研究를 支援」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 國立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全國民이나 地域住民을 대상으로 「그 平生敎育과 文化發展에 이바지」云云하는 規定들(同 改正案 제 3 조② 및 ③항)과 類似한 규정을 전혀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平生敎育과 大學圖書館을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法的根據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同 제20조가 「大學敎育의 目的達成에 이바지」할 수 있는 大學圖書館의 活動으로서, 敎育 및 研究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同條 1항): 讀書會, 鑑賞會, 展示會등의 主催(2항):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 및 文獻情報의 相互交

流(3항) : 圖書館業務에 관한 調查 및 研究(4항) : 기타 大學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5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條項들의 擴張解釋에 의하여 地域사회와의 關係에서 大學도서관의 業務가 직접 · 간접으로 平生教育과 連結을 맺게할 수는 있을 것이다.

以上에서 平生教育과 관련시켜서 大學圖書館의 役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教育支援

大學圖書館의 가장 중요한 役割중에 하나는 대학에 籍을 두고 있는 學生들의 教育을 支援해 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學習에 필요한 基本書, 雜誌 및 敎養書등을 具備해야 하는데, 文敎部基準에 의하면 單行本인 경우 학생 1인당 30권 또는 學科를 基準으로 할때는 학과당 5,000권과 學術雜誌 5종을 最少限度의 藏書數로 규정(大學設置基準令 제11조3항)함으로써 大學도서관의 장서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1980년 12월 30일자 문교부 「大學도서관운영 개선방안」에 의하면 學生數나 學科에 關係없이 단행본인 경우 最低基準을 40,000권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學術雜誌數는 分野別로 差等を 두고 있다.

그런데 上記한 基準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그 理由는 도서관장서를 단순히 單行本과 學術雜誌로만 區分하여 最少限度의 基準만을 정하고 있는 것은 學習에 필요한 장서의 量에만 置重하고 있을뿐, 그 內容이나 質에는 等한시하고 있는 感이 든다. 外國의 경우 Books for College Libraries: a Selected List와 같은 目錄이 非定期的이긴 하지만 刊行되어, 大學教育에 필요한 最小限度의 圖書蒐集을 위한 指針을 指示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法科大學이나 醫科大學과 같은 특수한 專門分野의 教育을 뒷받침하는 大學圖書館 장서의 最小具備條件을 具體적으로 例示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 學問의 分化 및 專門化는 종래와 같은 人文, 社會, 自然등 피상적이며 인위적인 구분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學問分野들이 다수 생겨서, 소위 多樣한 學問分野간의 Interdisciplinary 또는 Multidisciplinary approaches가 導入되어 傳統學問 分野간에 自己領域을 지키려는 立場에 대한 그 限界線이 모호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새 學問의 實例로는 保健이나 環境分野를 들 수 있다.

學問上의 이와 같은 새로운 추세에 따라 多樣한 學問分野를 專攻하는 學生들의 학습을 원활히 해주기 위한 大學圖書館의 役割도 종래의 단순한 keeper of the Books에서 탈피하여 Reader 및 Reference Services를 포함하는 public Service의 機能을 強化하여, 司書들이 敎授들과의 協助에 의하여 또는 創意에 의하여 積極적으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널리 利用할 수 있게 하는 効果적인 方案을 장구함

으로써, 學生들 스스로가 圖書館을 통한 學習方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誘導해 주어야 할 것이다.

大學圖書館들이 현재 直面하고 있는 문제중에 가장 先決을 要하는 문제로는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사모은 귀중한 책들이 거의 學生들에 의하여 읽혀지고 있지 않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外國의 大學도서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써, 예를 들면 미국의 Connecticut州立大學圖書館의 경우, 70年代 初에 장서수가 100만권을 돌파했으며 學部와 大學院生을 합쳐서 15,000여의 學生數를 갖고 있었지만, 書庫에 들어가보면 거의 90%이상의 책이 손한번 가지않은 깨끗한 책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先進 미국의 大學圖書館의 現實이 이러하다면, 圖書의 體系의인 蒐集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充分한 장서를 具備하지 못한 狀態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을 學生들이 試驗期間 동안에나 利用하며, 圖書館藏書를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대신 科目의 履修에 필요한 限定된 몇 권의 敎課書만 갖고 와서 그나마 不足한 열람석을 차지하는데 不過한 것이 支配的인 現象임을 나무라기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大學生活을 거쳐가는 동안에 圖書館利用方法을 學生들 스스로가 몸에 배이게 하여 平生을 통하여 生活化할 수 있도록 특히 配慮해 주는 것은 平生교육과의 관계에서 볼때, 大學圖書館의 가장 중요한 教育的 機能을 達成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學生들에게 圖書館利用法을 완전히 터득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좋은 方案을 마련하여 實踐에 옮기는 것은 大學圖書館圖만이 學生들에게 베풀 수 있는 平生교육을 위한 길잡이가 될수 있는 길이며, 學生들에게는 平生을 통하여 잊혀지지 않는 大學生活에 있어서의 보나스가 될 것이다.

나. 研究支援

大學圖書館 특히 綜合大學校의 圖書館은 大學院生과 敎授들의 研究를 支援해주는 研究圖書館(research library)으로서의 性格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歐美의 先進諸國에 있어서의 유서깊은 大學圖書館들은 수백만권의 각종 도서를 具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多樣한 연구를 支援해줄 수 있는 名實共히 研究圖書館의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大學自體가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독일식 大學圖書館의 類型에 있어서 소위 Scholar librarian 制度를 導入하여 主題分野에 있어서 博士學位를 갖고 있는 동시에 圖書館學에 대한 일반적인 敎育을 받은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分野別로 配置하여 圖書의 選定과 蒐集에 있어서 萬全을

기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미국의 大學圖書館이 優待하고 있는 소위 專門司書의 制度는 MLS學位 이외에 主題分野에 있어서의 Second Master's Degree를 받게 함으로써 研究支援을 하는 大學圖書館의 質을 높이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圖書館法 改正案 제5조 ①항이 규정하고 있는 專門司書의 制度도 司書資格을 大學院修了(碩士學位水準)으로 높임으로써, 연구도서관으로서의 機能을 擴充함에 있어 萬全을 기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大學圖書館은 아니지만 美國議會圖書館은 國家圖書館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研究圖書館으로써도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장서수가 많기로 유명한 도서관인데, 단행본만 1,500만권을 上廻하고 있는 동시에 이 도서관의 한 部署에 불과한 Legislative Reference Service에만 각 分野別 博士學位所持者들을 다수 포함하여 500餘名の 研究司書들이 있으며, 世界各國의 각종 圖書와 資料들을 구비하고 있어서, 어떠한 分野에 대한 깊이 있는 研究도 可能할 수 있게 되어갔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경우 이미 책의 原產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의회도서관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中國의 古典들은 이미 중국에서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 되지만, 이 도서관에서는 거의 전부 찾아볼 수 있어서 언제인가는 중국에 되돌려 주어야 하겠다는 웃지 못할 逸話가 있듯이, 막강한 金力を 投資하여 世界各地에서 필요한 研究資料들을 수없이 사들이고 있어서, 美國이 오늘날 先進隊列에서 가장 앞장을 설 수 있는 契機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미국의 Harvard大學校 法科大學圖書館의 경우, 法律關係圖書만도 100만권을 上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古典的 法律關係書籍들이 山積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운 생각이 드는 한편, 우리는 歷史的인 圖書들을 保存하는데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自責感이 들었던 적이 있었음을 새삼스럽게 想起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本人이 修學한바 있는 Columbia University Library System은 60年代 當時 350여만권의 장서가 中央圖書館인 Butler Library를 비롯하여 40餘個의 大學 또는 主題別 圖書館에 分散되어 있어서, 大學構內的 거의 모든 場所가 도서관인 것처럼 學生들과 책이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을 보고, 當時 서울大學校圖書館도 장서면에서 볼때 빈약하기 그지없던 環境속에서 大學生活을 보낸뒤라, 참으로 별천지에 온듯한 느낌을 받았다.

外國의 경우에도 모든 대학도서관들이 거대한 綜合大學들과 같이 거의 모든 分野에 걸친 研究를 支援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미국大學들도 최근에는 심각한 財政難을 겪고 있기 때문에 大學圖書館에 대한 재정지원이 相對的으로 弱화

된 감은 있지만, 워낙 저력이 있으며 長期間에 걸쳐서 蒐集된 研究資料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큰 타격은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1979년도 「한국도서관통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도서관만이 100만권의 장서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1,020,278권의 장서중에 東書가 245,400권이며 洋書가 233,905권으로 나머지 552,486권은 奎長閣圖書를 비롯한 古書들이며, 연간증가책수가 26,598권에 불과함으로 실제로 活用될 수 있는 資料는 50여만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의 大學圖書館들도 수만권으로 부터 수 10만권에 불과하니,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들이 完全한 意味에서 研究圖書館의 機能을 遂行하려면, 아직도 요원한 감이 있으며 先決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許多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다. 地域社會俸仕

大學圖書館의 固有한 役割은 前記한 바와 같이 「大學의 目的인 學生 및 教授의 教育 및 研究를 支援」하는데 있으므로 平生교육의 理念이 大學教育課程에 어떠한 形態로든지 制度化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支援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公共圖書館의 경우처럼, 大學圖書館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住民에게도 平生교육이나 기타의 目的을 위하여 開放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斷的으로 可否를 決定하기 어렵다. 그 理由는 先進國에 있어서도 重複되는 資料들을 모든 圖書館들이 경쟁적으로 蒐集하는 것은 不必要한 일일 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浪費라고 볼 수 있으므로 全國 또는 地域的으로 圖書館情報網(library information networks)을 설정하여, 특히 研究資料에 대해서는 相互間에 活用할 수 있는 協助體系를 設定하여 資料의 效率的인 利用을 最大限度로 確保하려는 傾向이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公共圖書館의 발전이 不振狀態에 있는 국가에서는 大學圖書館의 固有한 役割에 큰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 限界內에서, 대학도서관을 地域住民이나 그 地域에 있는 機關 또는 團體의 所屬員에게 一定한 條件下에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他 大學의 學生이나 教授들에게 개방한다든가, 產業體 또는 研究機關에 從事하는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특정한 대학도서관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資料의 活用이나 施設의 利用을 地域住民에게도 許容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大學圖書館을 地域社會의 누구에게나 개방함으로써 동네 코흘리개나, 中高等學生 또는 婦女子들의 工夫방으로 만드는 것은 대학도서관이 地域사회에 奉仕할 필요성이 있다는 前提條件에 대한 지나친 擴張解釋으로서 奉仕의 限界線을 넘어서서 바람직하지 못한 現象이며, 世界 어느나라의 대

학도서관도 그러한 政策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을 볼때, 大學圖書館의 地域社會奉仕에 대한 限界點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問題點

위에서 略述한 大學圖書館의 役割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게 위해서는 몇가지의 前提條件들이 우선 바람직한 方向으로 解決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첫째로 大學도서관이 教育 및 研究支援은 물론 나아가서는 地域社會奉仕까지 擔當하는 學問과 研究의 中樞的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서의 수집에 있어서 先導的인 役割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理由는 大學도서관 自體가 부실한 내용의 장서만을 수집하고 있어서 教育支援의 目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不充分한 狀態에 있다면 기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大學도서관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司書들의 資質을 높이는 문제이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學問은 專門的으로 分化될 뿐만 아니라, 相異한 學問간에 연결을 맺어주는 學際간의 새로운 研究方法이 導入됨으로서 나날이 그 複雜性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學問적인 일반적 추세에 뒤따라 가는 것은 물론 大學도서관이 資料의 蒐集과 奉仕면에 있어서 오히려 先導的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從來와 같은 大學學部出身司書만으로는 이러한 複雜한 業務를 담당하는데 不充分할 것이다.

세째로 大學도서관의 位置가 從來처럼 大學行政組織上 相對的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탈피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教育 및 研究支援의 目標을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學圖書館長의 職制를 最少限度 大學院長 내지 副總長級으로 上向調整함은 물론 圖書館長 자리에 도서관학을 전공한 教授 또 專門司書로써 補任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理由는 대부분의 大學도서관의 館長들이 定年退任을 目前에 둔 教授들이라는 現在의 實情은 大學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重要한 要因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圖書館相互間的 協助體系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要請은 大學圖書館 相互간에 원활한 協助體系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現實에 비추어 볼때, 研究資料의 相互補完이라는 見地에서도 무엇보다 時急한 解決을 要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는 일정한 地域社會에 위치하는 大學圖書館, 公共圖書館, 特殊圖書館, 相互간의 協助體系부터 발전시켜서 全國的인 規模로 擴大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今後의 展望

大學圖書館이 그 본래의 목적인 「教育 및 研究支援」을 해줄 수 있는 동시에, 地域住民의 「平生교육을 支援」해줄 수 있는 학문과 연구의 中樞機關으로서의 役割을 원만하게 遂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大學圖書館 自體가 藏書의 內容, 司書의 資質, 人的構成 및 相互協助體系등에 있어서 名實共히 훌륭한 大學圖書館으로써 發展하려는 것이 先決問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의 狀況에서 大學圖書館이 大學을 거쳐가는 學生들로 하여금 스스로 工夫하고 研究할 수 있는 方法을 도서관을 통하여 一生동안 習慣이 붙게 해주기 위해서, 圖書館利用方法을 각 대학도서관의 實情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reference 및 Public service機能을 強化해 나아가는 것도 大學圖書館이 國民의 平生교육에 기여하는 策경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大學圖書館이 그 奉仕活動을 地域社會에 대해서도 擴大하여, 住民의 平生교육까지 담당하는 一員으로 發展하려면 아직도 相當한 時日을 要하며, 國家의 인 次元에서도 大學圖書館을 育成하기 위한 막대한 財政의 支援이 있어야 함으로 이러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解決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大學圖書館들이 이러한 目標를 向하여 漸進的으로 그 內實을 充實하게 하여 發展指向的으로 成長해감으로써, 비로소 可能해질 수 있는 문제임을 附言해 둔다.

〈參 考 文 獻〉

- 1) 金昇漢, 韓國의 平生教育論 序說(서위: 民音社, 1980)
- 2) M·A 겔핀드(李炳穆 譯), 大學圖書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圖書館叢譯叢書 6)
- 3) 韓國圖書館통계 1979(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9)
- 4) Verner W.Clapp, The Future of Research Library.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4)
- 5) Toward a National Progra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Goals for Action, Prepared by the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5)
- 6) Robert T.Blackburn, "College Libraries-Indicted Failures: Some Reasons- and a Possible Remed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29, No.3 (May 1968), pp.171-177.
- 7) Robert P. Haro, "Changes, in Acadmic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33, No. 2 (March 1972), pp.97-103.
- 8) James S. Healey, "Public-Academic Library Coopera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32, No.2 (March 1971) pp. 121-126.
- 9) Cyril Cyril O. Houle, "The Role of Continuing Education in Current Professional Development," ALA Bulletin, vol.61, No.3 (March 1967), pp. 259-267.
- 10) Arthur M.Mcanally and Robert B.Downs, "The Changing Role of Directorsof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34, No. 2 (March 1973), pp.103-125.